

## 2025년도 광주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1.0 참여기업 선정계획 연장 공고 (광주 성장사다리)

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1.0 참여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27일

광주광역시장, 광주테크노파크원장

### 1] 프로젝트 개요

- (프로젝트명) 광주지역 성장사다리 Jump-up 프로젝트
- (프로젝트 기간) '25년~'26년(2년)
- (프로젝트 내용) 광주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

분 야	주요 지원내용
기업육성	중소기업 혁신바우처(기술지원, 컨설팅, 마케팅), 수출바우처,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, 스마트공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지원 수단을 지역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

### 2] 참여기업 선정

- (지원자격) 광주명품강소기업 졸업 및 예정기업(1기~12기)으로서, 주축 산업분야\*(연관 제품 및 기술 포함) 기업
  - \* 주축 산업 분야 : 모빌리티 의장 차체, 스마트홈 부품, 생체의료 소재 산업 (별첨 5참조)
  - \*\* 명품 기업 리스트 [www.gwangjucompany.kr](http://www.gwangjucompany.kr) 참조
- (선정규모) 6개사\* 내외
  - \* 선정규모는 추후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지원내용) '참여기업'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『레전드 50+』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사업 합동공고(24.12. 예정)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(참여기업 전용)

\* 합동공고 신청 시 패스트트랙(Fast-track) 적용을 통해 별도의 우대사항 적용 예정(별첨1 참조)

< 2025년 광주광역시 「광주성장사다리」 프로젝트 지원(예정) 사업 현황 >

구 분	지원분야	지원사업명	2025년 지원규모(안)
중소벤처 기업부	컨설팅	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- (기술지원) 핵심 기술지원(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건축 기술 이전 및 자재권 획득 제품 시험인증 등) - (컨설팅) 핵심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및 제조경영혁신 추진 전략 컨설팅 등 - (마케팅) 시장선점 준비를 위한 디자인 개선, 브랜드 지원, 홍보 지원 등	6.3억원
	수출지원	② 수출바우처 -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디자인 개발, 통번역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회·행사 참가 등 판로개척 지원	3.7억원
	정책자금	③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-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, 개발기술 및 보유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지원	80억원
	제조혁신	④ 스마트공장 - 제조 현장 내 첨단기술 도입 및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공장 솔루션(SW),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지원	16.6억원
	사업화	⑤ 지역주력산업육성(기업지원) - 자율 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(기술지원, 사업화지원)	4억원
	인력	⑥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- 신진,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% 지원	1.1억원
합 계			111.7억원

\* 지원규모는 정부지원금 기준이며, 기업부담금 별도 부담(세부 금액은 사업별 상이 : 별첨 1 참조)

○ (선정기준) 참여기업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

\* 선정평가시, 신청기업 K-TOP(KIBO Technology-rating Open Platform) 결과 참고 예정  
- (평가항목)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비고
공통지표 (80점)	프로젝트 부합성	· 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	10	비계량
		· 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	10	
	참여(지원) 필요성	· 프로젝트 참여(지원)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	10	
		· 프로젝트 참여(지원)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	10	
	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	· 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 · 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	10 15	
신청기업의 역량	· 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(대표자/책임자, 주생산품/보유기술, 재무상태 등)	15		
지역 자율지표 (20점)	신청기업 성장성	· 최근 3년(21~23) 평균 매출/고용/영업이익의 증가율	10	계량
	신청기업 혁신성	· 최근 3년(21~23) 평균 R&D 투자비율, 특히 출원·등록 건수	10	계량
우대가점 (5점)	협업 역량	·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역량 (거래관계 증명, 협업 협약서, 협업 계획 등) (해당시)	-	3점
	뿌리산업 발전 촉진	· '뿌리기술 전문기업'으로 지정된 기업		2점
배점 합계			100	-

3 유의사항

○ (중복참여 불가) 본 프로젝트 외에 역내외 “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” 참여기업 선정공고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(1개 프로젝트만 참여 가능)

\*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되거나, 또는 선정 이후라도 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

○ (신청자격 요건)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
구분	신청자격 요건
공통	1 · 「지역중소기업법」 상의 지역중소기업 (중소기업 <sup>1)</sup>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<sup>2)</sup>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)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* 단, 신청기업의 수요가 '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(스마트공장)'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도 가능
	2 · 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
개별	3 · 프로젝트의 목적 및 내용, 대상 산업군에 부합하는 기업 * 수행계획서 상에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된 과제(주제), 계획, 목표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(별첨 5참조)
	4 ·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 * (별첨2)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참조

○ (신청제외 대상) 다음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
구 분		신청제외 대상
공통	1	· 휴·폐업 중인 기업
	2	·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
	3	· 한국신용정보원의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회생·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	4	·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(은행연합회 등)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(체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
	5	· 임직원의 횡령·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,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(제3자 부당개입 등)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
	6	· 의무사항(보고서/성과실적 제출,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거나, 각종 법령 위반(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)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지원사업,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
	7	· 기업의 부도,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
개별	8	· 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(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) * (별첨3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참조

○ (기타 유의사항)

- ‘프로젝트 참여기업’으로 선정된 기업은 ‘24년~’26년까지 중기부 및 지자체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, 각 지원사업의 신청기준(업력, 업종, 결격사유 등)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신청기업에 요청하거나 참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,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#### 4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(안)

참여기업 모집공고	참여기업 신청·접수	참여기업 심사/선정	참여기업 선정확정	지원사업 합동공고	지원기업 심사/선정	프로젝트 지원
광주TP 홈페이지	이메일/ 방문접수	사전검토/ 선정평가	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	중기부 사업(공동)	사업별 심사·선정	사업별 지원
11.15	~12.03	~12.16	~12.18	12월	25.2월	25.3월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# 5 신청기간 및 방법

- (공고기간) 2024. 11. 27.(수) ~ 12. 03.(화)
- (접수기간) 2024. 11. 27.(수) ~ 12. 03.(화) 17:00 까지
-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온라인) 또는 방문접수(오프라인)

- (신청·접수처)

이메일 접수(온라인)			
소 속	담당자명	E-Mail	연락처
(재)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	이윤향 선임	lyh88@gjtp.or.kr	062-602-7226
방문접수(오프라인)			
(61008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(재)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기업육성팀			

- (제출서류)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관리지침 별지서식 참조

구분	제출서류	서식여부	비고
1	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	붙임1	필수
2	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신청서 1부	붙임2	필수
3	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수행계획서 1부	붙임3	필수
4	사업자등록증 1부 * (광주광역시 분사기업이 아닌 경우)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	-	필수
5	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	-	필수
6*	연도별('21~'23년)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	-	필수
7*	연도별('21~'23년)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각 1부	-	필수
8	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	붙임4	필수
9	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붙임5	필수
10	K-TOP Tech-Index 표준양식	붙임6	필수
11	신청기업현황조사표	붙임7	필수
12	연도별('21~'23년) 수출실적, 특허 등록(또는 출원), R&D 투자비율 관련 증빙,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서 등	-	해당시
13	협업 기업 간 거래관계 증명, 협업 약속서, 협업 계획 등	붙임8	해당시

⑥ **관련법규** (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)

- (지원근거)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
- (관련규정)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관리지침

⑦ **문의처**

- 프로젝트 및 참여기업 선정 관련 안내

구 분	담당기관(부서)		연락처
「광주 성장사다리」 프로젝트 총괄	총괄	광주광역시 (창업진흥과)	062-613-3863
「광주 성장사다리」 프로젝트 지원	주관 기관	광주테크노파크 (기업육성팀)	062-602-7226

- 별첨 1. 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  
 2.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 
 3. 프로젝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 
 4. 참여기업 평가항목(계량지표) 세부 배점기준  
 5. 참여기업 대상 산업 및 품목

**별첨1****프로젝트 세부지원 내용 및 참여기업 우대사항****사업1****중소기업 혁신바우처 (컨설팅<sup>주요</sup>, 기술지원, 마케팅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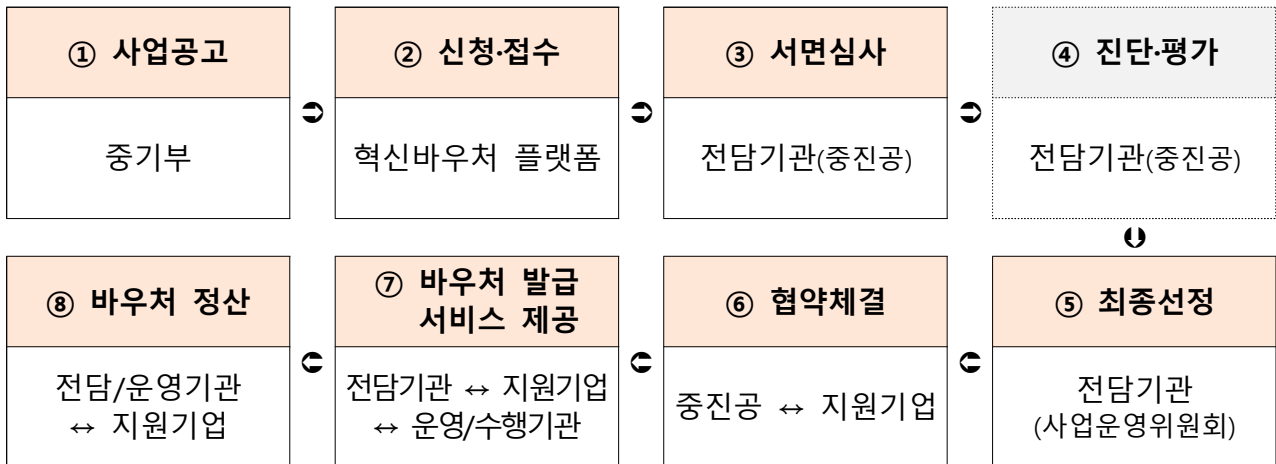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- (지원규모) '25년 약 6.3억원\* 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  - \* 일반형 바우처 : 지역성장 바우처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- \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(지원내용)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지원기업(수요기업)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
  - \* 내역별 세부 지원내용 상이

**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**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일반바우처 (지역자율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&lt;완화&gt;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, 보조율만 차등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</li> <li>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의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</li> <li>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</li> </ol> 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, 10개 프로그램의 바우처 및 융복합컨설팅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청사항 : 일반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,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•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0백만원(정부지원 보조율 40~85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3년 평균 매출액 : 3억원 이하(85%), 3~10억원 이하(75%), 10~50억원 이하(65%), 50~120억원 이하(45%), 120억원 이상(40%)</li> </ul> </li> </ul>
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\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  - \* (운영기관) '25년 별도 선정 예정

□ (추진절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혁신바우처 플랫폼(www.mssmiv.com)
- (서면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, 사업추진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중기부·중진공·외부전문가 구성의 '사업운영위원회'를 통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신청자격 요건 완화 : 참여기업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면 가능
  - \* (기존) 제조업 영위 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) → (우대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참여기업이 신청 시 '④진단·평가' 단계의 현장평가 면제

## 사업2

## 수출바우처 (수출지원 /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

- (사업목적) 내수·수출 중소기업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
- (지원규모) '25년 약 3.7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하고,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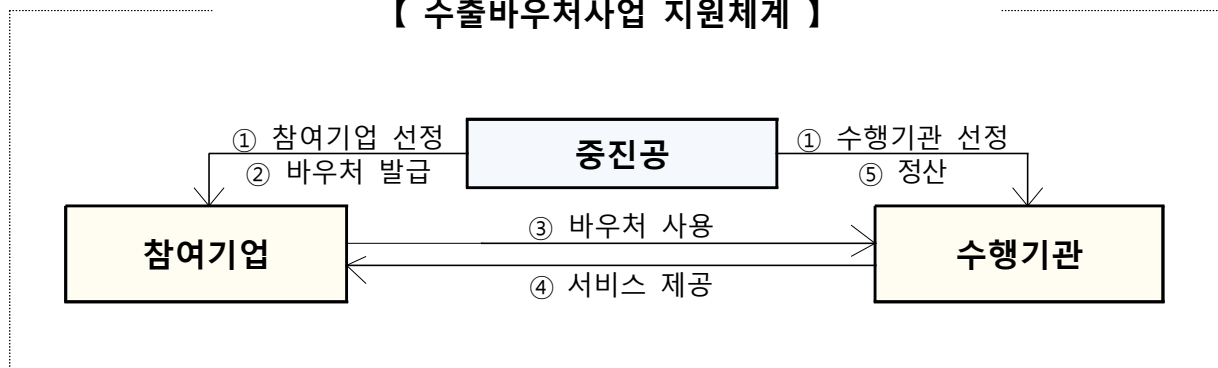
### 【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】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트랙	지원 대상	지원한도	국고보조율
내수기업	수출액 '0~1천불 미만'	30	(매출액 기준) 100억원 미만 : 70% 100~300억원 : 60% 300억원 이상 : 50%
수출초보	수출액 '1천~10만불 미만'	30	
수출유망	수출액 '10~100만불 미만'	40	
수출성장	수출액 '100~500만불 미만'	70	
수출강소	수출액 '500만불 이상'	100	

- (지원내용) 디자인 개발, 홍보, 바이어 발굴, 전시회,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(수출바우처)으로 지원
  - 선정기업에 “수출바우처” 발급 →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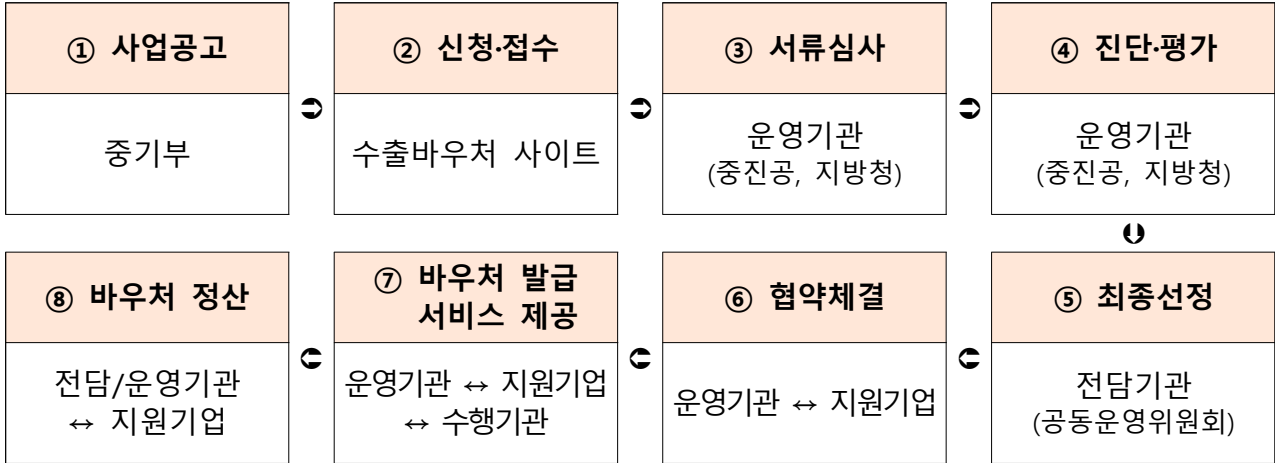
### 【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】



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, 운영기관\*, 수행기관(서비스 제공기관)

\* (운영기관) 중진공, 지방청

□ (추진절차)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중진공 수출바우처 사이트(www.exportvoucher.com)
- (서류심사) 신청자격 요건, 지원(제외)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 진행 후 현장평가 대상 선정
- (진단·평가) 수출역량(수출성장단계) 및 업종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른 현장진단·평가 실시
- (최종선정) 운영기관(중진공·지방청)이 제출한 선정명단을 전담기관(중진공)의 '공동운영위원회'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(참여기업)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중 수출바우처 신청기업 간 제한경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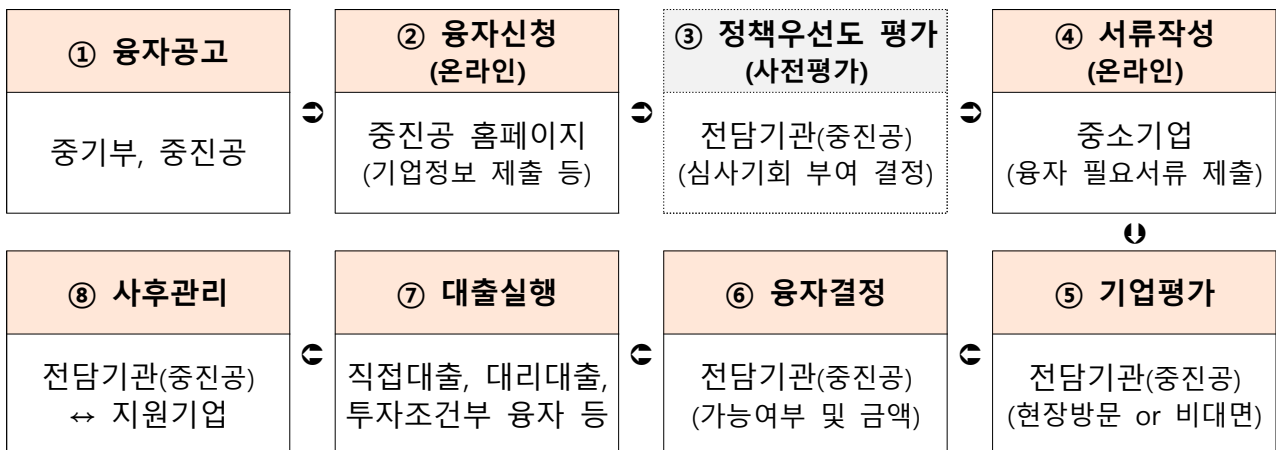
\* 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트랙(내수/초보/유망/성장/강소)을 선택하여 신청하고, 평가를 통해 할당예산(100억원) 한도 내 지원기업 선정

\*\* '24년도 기준 사업내용으로 추후 '25년도 사업공고 확인 요망 必

### 사업3

### 중소기업 정책자금(용자) [정책자금]

- (사업목적)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·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대상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
- (지원규모) '25년 약 80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- \* 사업별 세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'24년 용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- (지원내용) 지원기업에게 혁신창업사업화,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 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전 등의 자금을 용자 또는 이차보전
  - \*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'24년 용자계획 공고 추가 확인 요망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중진공)
- (추진절차) 중소기업 정책자금(용자) 공통 추진절차



○ (신청·접수)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
\*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·지부 선택 후 월별·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및 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, 사업전환자금/구조개선전용/긴급경영(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) 및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

- **(용자신청)**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희망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신청\*
  - \* 「레전드 50+」 선정기업(유효기간 내)의 경우 수시접수 가능
- **(정책우선도 평가)** 지역본부·지부별 예산, 신청물량을 고려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
  - \* 「레전드 50+」 선정기업(유효기간 내)의 경우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
- **(서류작성)**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 전담기관(중진공)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용자서류 제출
- **(기업평가)** 전담기관(중진공)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\*(기업진단 포함) 수행
  - \*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(Rating) 산정
- **(용자결정)** 기업심사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 결정
- **(대출실행)**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
  - \* **(중진공)** 직접대출, 성장공유형(전환권), **(취급은행)** 대리대출, 이차보전
- **(사후관리)** 부정사용 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 실시
  - \* 대출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,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  - \*\*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은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

#### 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**(절차 간소화)** '온라인신청' 수시접수 가능 및 '정책우선도 평가' 단계 생략
  - \* 온라인 용자신청(수시접수 가능) → 정책우선도 평가(생략) → 서류작성 → 기업평가 → 용자결정
- **(평가 간소화)**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**패스트트랙** 적용
  - \* **(일반)** 29개 항목 → **(우대)** 15개 항목

## 사업4

## 스마트공장 (제조혁신 /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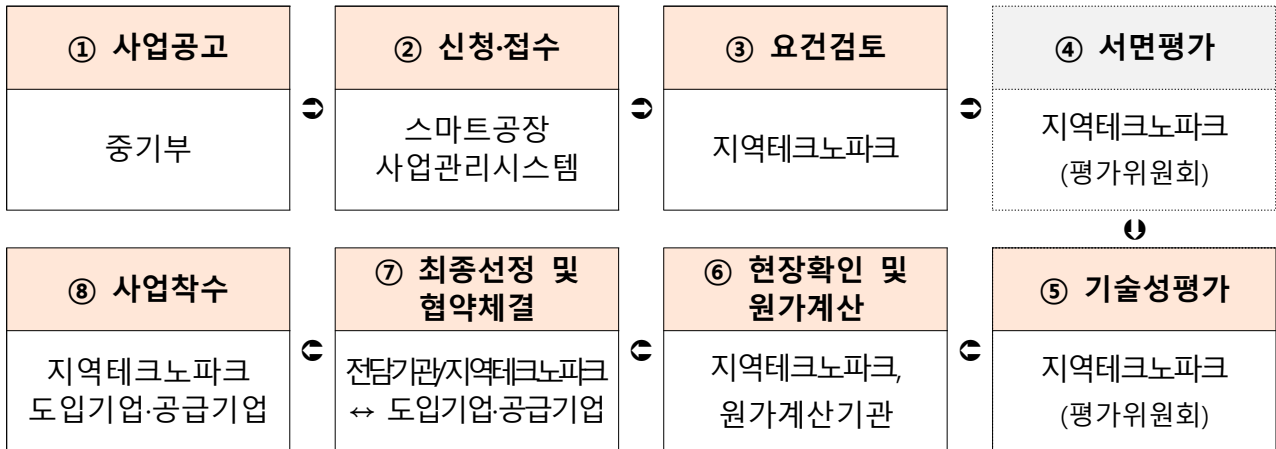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제조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스마트화 기반 강화,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
- (지원규모) '25년 약 16.6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- \* 세부 신청자격은 본공고 참조
- (지원내용) 정보통신기술(ICT)로 제품의 기획-설계-제조-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  -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  - \* 세부내용은 본공고 참조

### 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비고
고도화 (지역특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신청자격)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인 제조 중소·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접수</li> <li>-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</li> <li>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</li> <li>· (지원규모) 최대 5억원 이내, (사업기간) 9개월</li> </ul>	정부지원금 비중 50% 내 (민간부담금 50% 이상)

- (추진체계) 전담기관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), 운영기관(지역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)

□ (추진절차)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
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, 지원 적정성 및 도입·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
- (기술성평가)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·방식,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
- (현장확인 및 원가계산)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,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
  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, 일부 예외 인정\* 단, 공장설립(계획)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
  - \* (예외 인정항목)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,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
- (최종선정)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'④서면평가' 단계 면제

**사업5**

**지역주력산업육성 (사업화<sup>주요</sup>, 기술지원 / 지역특화산업육성)**

- (사업목적) 지역주도 지역혁신기관 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연계 이어달리기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(지원규모) '25년 약 3.4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분야 영위 지역중소기업
- (지원내용) 비수도권 14개 시·도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사업화 등 지원(참여기업 중 지원기업 선정)

**<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**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지역주력 산업육성 (기업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비수도권 14개 시·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영위 지역중소기업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(PRE R&amp;D) 및 사업화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(POST R&amp;D) 지원</li> <li>•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(기업부담금 10% 이상)</li> </ul>

**< 기업지원 프로그램 주요현황 >**

구 분	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(예시)
PRE R&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획지원 : 기술개발 기획지원</li> <li>• 기술이전 :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</li> <li>• 기술지도 :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</li> <li>• 장비지원 :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</li> <li>• 인증지원 :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</li> <li>• 특허지원 : 국내외 특허지원(특허출원, 상표출원, 국외출원, PCT 등)</li> </ul>
POST R&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제품제작 :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</li> <li>• 제품고급화 :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</li> <li>• 디자인 : 제품, 포장, 디자인, 브랜드 개발 지원</li> <li>• 시장조사 :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</li> <li>• 마케팅 : 시장조사, 홍보, 전시회 참가 지원</li> <li>• 컨설팅 :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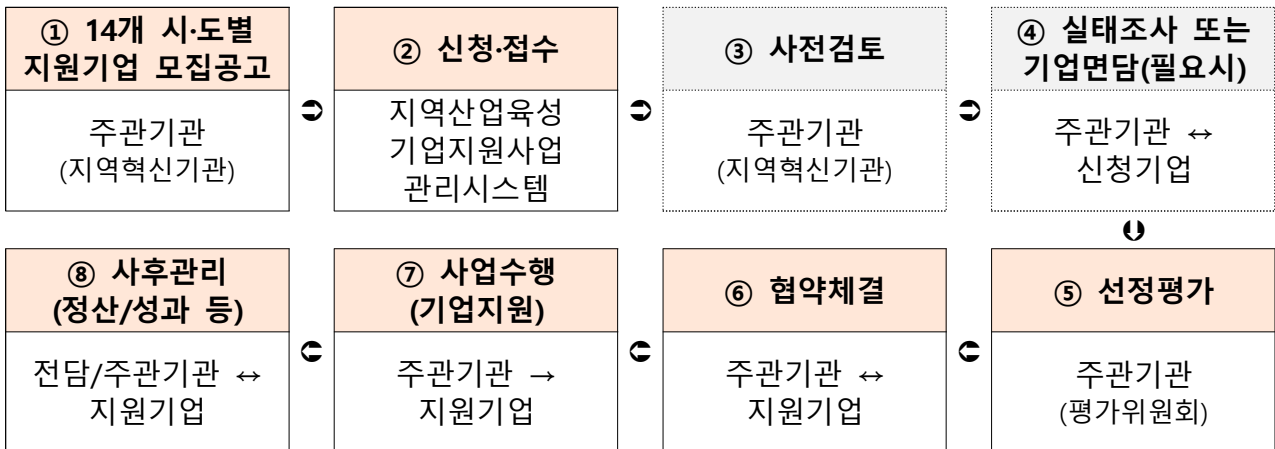
※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 특성 및 지역혁신기관 제안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(추진체계) 전담기관(기정원/TIPA), 주관기관(14개 시·도 지역혁신기관)

< 지역별 프로젝트 주관기관 현황 >

구 분	기관명	구 분	기관명
부산	(재)부산테크노파크	전북	(재)전북테크노파크
대구	(재)대구테크노파크, (재)대구기계부품연구원	전남	(재)전남테크노파크
광주	(재)광주테크노파크	경북	(재)경북테크노파크
대전	(재)대전테크노파크	경남	(재)경남테크노파크
울산	(재)울산테크노파크	강원	(재)강원테크노파크
충북	(재)충북테크노파크	제주	(재)제주테크노파크
충남	(재)충남테크노파크	세종	(재)세종테크노파크

□ (추진절차) 지역주력산업육성(기업지원) 주요 추진절차(기존절차)



※ ③~⑤의 선정절차 및 방식은 주관기관별로 공고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(신청·접수)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/region/rms)
- (사전검토)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
- (선정평가)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또는 대면(발표)평가 진행,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업 선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- 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- ☞ 제출서류 간소화 : 기제출된 증빙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시 면제 가능
- ☞ 선정절차 간소화 : 지역별 상황에 따라 ③, ④단계 면제 가능

**사업6**

**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(R&D) (인력지원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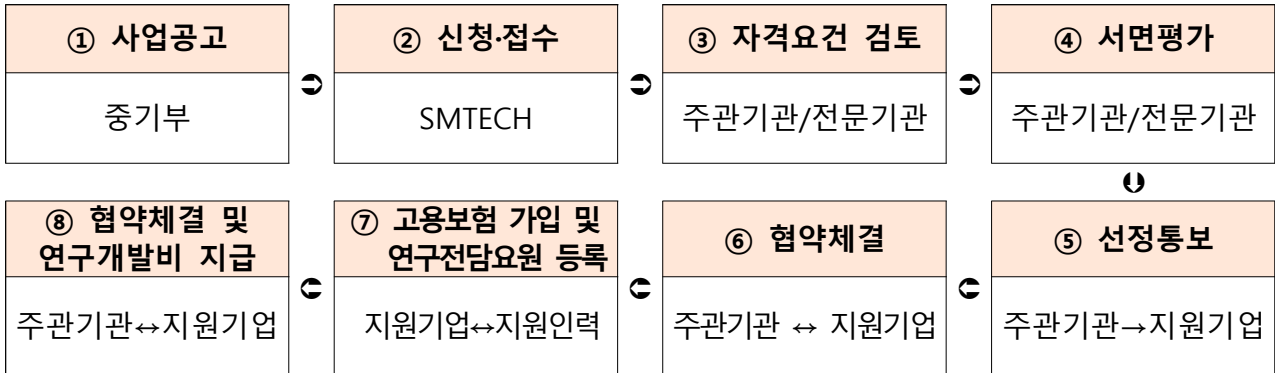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이공계 신진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·신중년 일자리 창출
- (지원규모) '25년 약 1.1억원(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)
- (지원대상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- \*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상이
-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% 지원

**< 내역별 세부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>**

내역명	신청자격 및 지원내용						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 및 만 39세 이하의 신진 연구인력</li> <li>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</li> <li>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</li> <li>•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지원</li> </ul>						
	구 분	기준연봉*			정부지원연구개발비(정부지원금)**		
		1년차	2년차	3년차	1년차	2년차	3년차
	학 사	3,200만원	3,500만원	3,800만원	1,600만원	1,750만원	1,900만원
	석 사	4,100만원	4,500만원	4,900만원	2,050만원	2,250만원	2,450만원
박 사	5,000만원	5,500만원	6,000만원	2,500만원	2,750만원	3,000만원	
	* 기준연봉(세전금액) :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(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) ② 산출식 : (기본급+월정액수당(퇴직금 제외))×12개월 *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						
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 및 고경력 연구인력</li> <li>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</li> <li>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 후,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인 자</li> <li>•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% 지원</li> </ul>						
	구분	연봉		정부지원연구개발비(정부지원금)			
	지원기준	제한 없음		연봉의 50% (연간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)			
		* 연봉(세전금액)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(퇴직금 제외)) × 12개월					

□ (추진체계) 전문기관(기정원), 주관연구개발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
□ (추진절차) 신진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주요 추진절차



- (신청·접수)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·접수

☞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  
\*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'사업별 FAQ' 확인

☞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 사업공고 →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
\*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~2일전까지 신청바람

- (자격요건 검토) 신청기업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참여제한 및 이중수혜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
- (서면평가)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서면평가  
\* 평가항목 :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, 연구개발역량, 지원인력 활용계획 등
- (최종선정) 서면평가 결과(종합평점, 우대가점 등)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기업을 최종 확정

※ 프로젝트 참여기업 우대사항

☞ 프로젝트 전용예산 :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

## 별첨2

##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<개별요건>

사업명	내역명	(개별 4)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
중소기업 혁신바우처	일반 바우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(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)</li> <li>1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&lt;참고 1&gt;</li> <li>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"C" 업종 적용&lt;참고 2&gt;</li> <li>3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적용</li> </ul>
중소기업 정책자금 (용자)	5대 분야 2개 용도 21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용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</li> <li>*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내용 참고</li> </ul>
수출 바우처	내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0~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</li> <li>* 추가사항 :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</li> </ul>
	수출 초보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</li> </ul>
	수출 유망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</li> </ul>
	수출 성장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</li> </ul>
	수출 강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</li> </ul>
창업중심 대학	창업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 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</li> </ul>
스마트 공장	고도화1 (지역특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제조 중소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 시엄</li> <li>- (도입기업) 국내 제조기업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</li> <li>- (공급기업)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의 '공급기업 Pool'에 등록된 기업</li> </ul>
지역특화 산업육성 (기업지원)	지역주력 산업육성 (기업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</li> </ul>
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(R&D)	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의 만 39세 이하 신진 연구인력</li> <li>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</li> <li>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 하 청년인력</li> </ul>
	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중소기업의 고경력 연구인력</li> <li>- (지원기업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</li> <li>- (연구인력) 이공계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 후,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연구경 력이 학사 14년, 석사 10년, 박사 5년 이상인 자</li> </ul>
기술보증 기금	기술보증 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신청자격)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</li> </ul>

### 별첨3

##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개별요건>

사업구분	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
<b>중소기업 혁신바우처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</li> <li>·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</li> <li>·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</li> <li>·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</li> <li>·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기업 (예외 : '23년 1차,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)</li> <li>·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</li> <li>· 대표자/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(개별 6)</li> </ul>
<b>중소기업 정책자금 (융자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&lt;참고 3&gt;을 영위하는 기업</li> <li>·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 (예외 : ①제조업, 혁신성장-초격차-신산업,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, ② 사회적경제기업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] 중 소상공인, ③협동화 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)</li> <li>·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</li> <li>·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&lt;참고 4&gt;을 초과하는 기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외① : 업력 7년 미만, 「소득세법」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</li> <li>- 예외②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」 상의 협동조합</li> <li>- 예외③ :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, 매출액 대비 R&amp;D 투자비율이 1.5% 이상인 기업의 R&amp;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·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① :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</li> <li>- 대상② : 3년 연속 이자보상배(비)율 1.0 미만,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(-)인 기업(예외: 유형자산, R&amp;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.5% 이상 증가)</li> <li>- 대상③ :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(예외: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)</li> </ul> </li> <li>·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외① :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</li> <li>- 예외② :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(추가 1회에 한함)</li> <li>- 예외③ :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, 재도약지원/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·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① :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, 코스닥시장 상장기업, 「자본시장법」에 의한 신용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(예외 :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)</li> <li>- 대상② :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(CR1)(예외: 업력 3년 미만 기업,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상 협동조합,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)</li> <li>- 대상③ :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</li> </ul> </li> </ul>

**사업구분** 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
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,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- 예외① : (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, 용자방식) 신시장진출지원, 신성장기, 투융자복합금융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정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  - 예외② : (과거실적 산정예외)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
  - 예외③ : (신규지원 예외대상) 소재·부품/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100 ·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
-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  - 예외① : (자금)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스케일업금융
  - 예외② : (용자방식)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-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  - 예외① : (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, 용도, 용자방식, 대상)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, 스케일업금융, 창업기반지원자금(대환대출), 시설자금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, 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· 스타트업 100 ·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, 브랜드K 인증기업,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
  - 예외② : (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)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

**수출  
바우처**

-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중기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-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  -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
  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
-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분류	품목코드	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담배 중개업
	46331, 3 / 4722中	주류,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9124	갬블링 및 베팅업

\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-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인 경우

**창업중심  
대학**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거나, 영위하고자 하는 자 <참고 5>
- 사업연도가 '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\*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, 중도포기자) 포함

사업구분	(개별 7)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<공통요건은 「별지 제8호」 참조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</li> <li>**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</li> <li>•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</li> <li>•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</li> <li>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,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</li> </ul>
스마트 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제 신청일 기준 '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'을 수행 중인 기업</li> <li>•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</li> <li>•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</li> </ul>
지역특화 산업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인 기업</li> <li>•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•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ul>
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(R&D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</li> <li>•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• 기(既) 개발/기(既) 지원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</li> <li>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용과 유사한 경우</li> <li>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</li> <li>*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</li> <li>*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</li> <li>㉓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 및 각 기관의 대표자(공동대표, 각자대표 포함)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기술보증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</li> <li>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</li> <li>• KOSPI 상장기업(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)</li> <li>• 도박게임, 사치향락 업종 영위기업</li> <li>• 보증금지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</li> </ul> </li> <li>• 보증제한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</li> <li>- 휴업 중인 기업,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</li> </ul> </li> </ul>

#### 별첨4

### 참여기업 평가항목 계량지표(성장성·혁신성) 세부 배점기준

#### □ 성장성 지표(10점 만점)

구 분	매출	고용	영업이익	배점 조건	배 점
최근 3년('21~'23) 연평균 성장률 (CAGR*)	2% 이상	1% 이상	1% 이상	3개 지표 모두 충족 시	10
				3개 지표 중 2개 지표 충족 시	8
				3개 지표 중 1개 지표 충족 시	5
				해당없음	1

\* (참고)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(CAGR) 계산산식:  $(2023\text{년도 값}/2021\text{년도 값})^{(1/2)}-1$

\*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준이며, 고용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기준임

#### □ 혁신성 지표(10점 만점)

구 분	배점 조건	배 점
최근 3년('21~'23) 평균 R&D 투자비율*	5% 이상	5
	4% 이상 ~ 5% 미만	4
	3% 이상 ~ 4% 미만	3
	2% 이상 ~ 3% 미만	2
	1% 이상 ~ 2% 미만	1
	1% 미만	-
최근 3년('21~'23)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	2건 이상	5
	1건 이상	3
	1건 미만	-

\*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상의 최근 3년('21~'23) R&D 투자비율의 산술평균 값

**별첨5****참여기업 대상 산업 및 품목**

## □ 지역 주축산업 및 핵심 품목

구 분	핵심 품목
모빌리티 의장·전장 부품 산업	① 완성차 (승용차, RV차, 특수목적차 등) ② 메인바디 (차체, 골격, 프레임 등) ③ 바디외장 (금속 성형품, 도어, 범퍼, 루프, 트렁크, 후드, 전조등, 금형 등) ④ 바디내장 (플라스틱 성형품, 주행보조, 자세제어, 배전, 차량통신, 제어기 등) ※ 위 품목 중 전장 부품 제외
스마트홈 부품 산업	① 중소형생활가전 (세탁기, 냉장고, 공기청정기, 에어컨, 에어드레서 등) ② 홈IoT부품 (블루투스, 와이파이, 제어기, 소프트웨어 등) ③ 가전 내장재 (조명, 모터, 전동기, 압축기, 플라스틱 성형품 등) ④ 가전 외장재 (금속 성형품, 인쇄, 금형 등)
생체의료 소재·부품 산업	① 생체용 의료 소재 (임플란트, 인공치아, 골절용 소재, 흡수성 소재 등) ② 대체복원용 의료 소재 (안경, 콘택트렌즈, 고분자 소재 등) ③ 측정 및 시술 기기 (초음파 진단기기, MRI 등) ④ 보조 의료기기 (재활보조기, 이동지원기기, 고령친화 기기 등)

## 참고1

##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1]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10. 17.>

###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6. 가구 제조업	C32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	
9. 식료품 제조업	C10	
10. 담배 제조업	C12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
22. 수도업	E36	
23. 건설업	F	
24. 도매 및 소매업	G	
25. 음료 제조업	C11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
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(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)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2. 운수 및 창고업	H	
33. 정보통신업	J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 대업은 제외한다)	N (N76 제외)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금융 및 보험업	K	
42. 부동산업	L	
43. 임대업	N76	
44. 교육 서비스업	P	

**비고**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## 참고2

##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3]

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7. 10. 17.>

###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

**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**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**비고**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### 참고3

## 중소기업 정책자금 - 용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

※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, 「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」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
### □ 용자제외 대상 업종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용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- \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- \*\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

## □ 용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

- 제조업 영위기업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- 혁신성장분야, 초격차·신산업분야, 그린분야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- 사회적경제기업 : 소상공인, 보건업(86) 영위기업 지원 허용
  - \*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-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: 소상공인 지원 허용
  - \* (추진주체)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(중소기업 협동화 기준)
-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: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

• 호텔업(55101) 중 관광숙박업,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(55109)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85614), 자동차 임대업(76110),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(91210), 기타 오락장 운영업(91229), 수상오락 서비스업(9123), 산업용 세탁업(96911), 세탁물공급업(96913)

## 참고4

## 중소기업 정책자금 -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

※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, 「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
번호	업종(KSIC-10)	평균부채비율(%)	제한부채비율(%)	사업전환 융자
1	A01(농업)	178.0	500.0	1000.0
2	A03(어업)	252.9	500.0	1000.0
3	B(광업)	167.4	500.0	1000.0
4	C(제조업)	121.9	365.7	731.4
5	C10(식료품)	150.7	452.1	904.2
6	C11(음료)	136.3	408.9	817.8
7	C13(섬유제품(의복제외))	131.9	395.7	791.4
8	C14(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)	133.0	399.0	798.0
9	C15(가죽, 가방 및 신발)	121.5	364.5	729.0
10	C16(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 제외))	159.2	477.6	955.2
11	C17(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)	119.1	357.3	714.6
12	C18(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)	127.7	383.1	766.2
13	C19(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)	130.7	392.1	784.2
14	C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)	98.5	295.5	591.0
15	C21(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)	69.3	207.9	415.8
16	C22(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)	120.3	360.9	721.8
17	C23(비금속 광물제품)	99.6	298.8	597.6
18	C24(1차 금속)	134.6	403.8	807.6
19	C25(금속가공제품(기계 및 가구 제외))	138.0	414.0	828.0
20	C26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)	102.1	306.3	612.6
21	C27(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)	91.7	275.1	550.2
22	C28(전기장비)	108.3	324.9	649.8
23	C29(기타 기계 및 장비)	118.5	355.5	711.0
24	C30(자동차 및 트레일러)	161.6	484.8	969.6
25	C31(기타 운송장비)	313.7	500.0	1000.0
26	C32(가구)	164.8	494.4	988.8
27	C33(기타 제품 제조업)	120.2	360.3	721.2
28	C34(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)	165.2	495.6	991.2
29	D35(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)	520.1	500.0	1000.0
30	E(하수·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)	120.9	362.7	725.4
31	F(건설업)	107.9	323.7	647.4
32	G(도매 및 소매업)	136.8	410.4	820.8
33	H(운수 및 창고업)	174.2	500.0	1000.0
34	I(숙박 및 음식점업)	381.0	500.0	1000.0
35	J(정보통신업)	119.6	358.8	717.6
36	L(부동산업)	445.1	500.0	1000.0
37	M(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)	125.5	376.5	753.0
38	N(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)	203.6	500.0	1000.0
39	P(교육 서비스업)	163.4	490.2	980.4
40	R(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)	224.2	500.0	1000.0
41	기타산업	194.5	500.0	1000.0

- 1)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
- 2)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%, 최대 500% 이내 (부채비율=부채총계/자본총계)
- 3)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(21년)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

**참고5****창업사업화 지원사업 - 지원제외 업종**

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구분	대상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\*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